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2. 23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2.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가. 제안이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 관한조례를 부분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 부칙 제2항의 효력기간을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개발사업 중 건축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등기를 못 하고 있는 분권자에게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요? ○ 부천에는 특례법 적용대상지가 몇 군데인가? ○ 등기를 전부 마치면 특례법은 폐지되는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 공영개발사업으로 뉴서울아파트 1건임 ○ 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인이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를 부분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 부칙 제2항의 효력기간을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효력기간)의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 부 칙 ①(생략) ②(효력기간)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 부 칙 ①(현행과 같음) ②(효력기간)2000년 6월 30일.....